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칠 곡 군



### 1. 제안이유

송정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및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산정 및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비 증가에 대비하고, 휴양림 예약·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휴양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의 범위, 휴관일, 이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 ~ 제5조)
-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안 별표 1)
- 다.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2)
- 라. 입장 제한 및 퇴장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마.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사. 관리자 예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및 별지 서식)
- 아.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자.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차. 준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 17조)

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서 제출 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전화)054-979-6604, 팩스)054-979-6529, E-mail)[seoicp@korea.kr](mailto:seoicp@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4. 자치법규 내용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정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오토캠핑장

제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이용하기에”를 “이용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까지”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 2. 설 및 추석 당일

제5조제2항제1호 중 “11시”를 “12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시”를 “8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입장 제한 등)”을 “(입장 제한 및 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이용 신청)”을 “(이용 신청 및 결제)”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위탁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송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제1항과 관련)

### 1. 일반 기준

-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 바.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임기제부사관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차. “칠곡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파. “다자녀가정”이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칠곡군 거주)을 말한다.

## 2. 입장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이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인/1일	1,000	800	
	청소년	1인/1일	700	500	
	어린이	1인/1일	500	300	
	군인	1인/1일	700	500	

##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숲속의집	32㎡형 (5인 기준)	1동/1박	100,000	60,000	
	51㎡형 (6인 기준)	1동/1박	120,000	70,000	
	64㎡형 (6인 기준)	1동/1박	130,000	80,000	
	104㎡형 (12인 기준)	1동/1박	200,000	130,000	
산림휴양관	40㎡형 (6인 기준)	1동/1박	90,000	60,000	
	68.㎡형 (8인 기준)	1동/1박	150,000	100,000	
	80㎡형 (12인 기준)	1동/1박	180,000	120,000	
야영장	야영데크 (12㎡)	1동/1박	30,000	20,000	3m×4m (전기)
	야영데크 (24㎡)	1동/1박	15,000	10,000	4m×6m (전기)
	야영데크 (12㎡)	1동/1박	10,000	6,000	3m×4m
바비큐장	소형 (3m×4m)	1동/1일	5,000		
	대형 (4m×6m)	1동/1일	10,000		
오토캠핑장	대형 (100㎡)	1동/1박	60,000	40,000	
	소형 (50㎡)	1동/1박	40,000	30,000	

[별표 2]

##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제7조제2항과 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	칠곡군민	요금의 30% 할인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50% 할인	칠곡군 거주 가정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약당사자(또는 현장예약자)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용 첫날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 요금 감면 서류 미확인 또는 예약내역과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감면 적용이 취소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실에 한하며,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서식]

##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사용대장

(제14조제3항과 관련)

			결 재

### 1. 근무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 2. 관리자 예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약사유 :</li> <li>◦ 사용자 :</li> <li>◦ 예약일자 :</li> <li>◦ 사용일자 :</li> <li>◦ 사용목적 :</li> </ul>
---

### 3.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

입장자 수	시 설 사 용 실 적						비 고
	주차장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핑장	바비큐장	
명	대	동	실	면	면	면	

### 4. 특기사항

<p>※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p>
---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u> ----- ----- ----- -.</p>
<p>제3조(시설의 범위) <u>송정자연휴양림</u>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4. (생략)</p>	<p>제3조(시설의 범위) <u>자연휴양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오토캠핑장</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u>&lt;신 설&gt;</u></p> <p>2.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산불, <u>산사태</u> 등으로 자연휴양</p>	<p>제4조(휴관일 등)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설 및 추석 당일</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산사태, 홍수, 태풍</u> -----</p>

립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 6. (생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① (생략)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생략)

--- 이용하기 -----  
-----

4. ~ 6.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제1항제3호-----  
-----

2. -----  
-----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2시  
-----

2.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 5. (생 략)

③ -----  
-----8시  
-----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⑤ ----- 제4항-----  
-----  
-----  
-----  
-----.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 5. (현행과 같음)

- |   |       |
|---|-------|
| 6.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7.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8.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9.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0. 「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1.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2. 「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 제> |
| 13. 「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5호에                             | <삭 제> |



다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생략)

제9조(위약금)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약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6.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 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제12조 (생략)

<신설>

----- 통합예약시스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설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9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

<신 설>

<신 설>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신 설>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  
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  
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  
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  
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 설>

제16조(위탁 관리·운영) 군수는 자  
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  
는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  
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  
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  
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8.]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821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2023. 4. 11.>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 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제6조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설사용 예약) ① ~ ③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6조(장부의 비치) <u>현장책임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설사용 예약)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⑤ <u>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 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u></p> <p>⑥ <u>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⑦ <u>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 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u></p> <p>&lt;삭 제&gt;</p>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8.]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